

#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8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10. 26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○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,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활동(계약의 자유)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함.(안 제16조,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의2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)  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, 규제개혁담당)

### 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삭제함(안 제16조제2호·제17조제1호)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5. 9. 17. ~ 10. 08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처리방법,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(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)등”을 “처리방법 등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호 중 “처리방법,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(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) 등”을 “처리방법 등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)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, <u>처리방법,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(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)</u> 등을 이행할 것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6조(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-----</p> <p>-----<u>처리방법 등</u></p>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·점검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, <u>처리방법,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(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)</u>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7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·점검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-----</p> <p><u>처리방법 등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